

##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[ ] (또는) 분쟁조정 신청서 [ ]

※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,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(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)  
※ (\*)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,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,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,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(www.ftc.go.kr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b>신고(청)인</b>	성명(*)			생년월일(*)		
	사업자인 경우	사업자명			사업자등록번호	
		대표자 성명				
	주소(*)					
	연락처	전화번호(*)			휴대폰	
		팩스번호			이메일	
피신고(청)인과의 관계			신고(청)인의 연간 매출액			

<b>피신고(청)인</b>	사업자명(*)			대표자 성명	
	주소 또는 전화번호(*)				관련부서 및 담당자
	사업내용 또는 영업형태				
피신고(청)인의 연간 매출액					

<b>신고(청)내용(*)</b>	
-------------------	--

<b>분쟁조정여부(*)</b>	[ ] 진행하였음([ ] 성립, [ ] 불성립·종결), [ ] 진행한 적 없음([ ] 조정희망, [ ] 조정불희망)
------------------	--

<b>증거자료</b>	[ ] 있음 [ ] 없음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<b>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</b>	[ ] 공개 [ ] 비공개 [ ] 사건 조치 후 공개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「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 고 인 : (서명 또는 인)

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

## <첨부 1 :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>

신고서 작성 안내
<p><b>◆ 신고서 용도</b></p> <p>※ 이 신고서는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대리점법’이라 합니다)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·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재판매, 위탁판매 등과 관련하여 아래 「위반행위 사전점검표」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.</p>
<p><b>◆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</b></p> <p>※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,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리점이 공급업자가 납품 또는 위탁하는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, 일부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</li> <li>2.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</li> <li>3. 공급업자의 규모가 작아서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상 정의에 따름)이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(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정의에 따름)인 경우</li> <li>4. 대리점의 규모가 커서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상 정의에 따름)도 아니고 중소기업협동조합(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정의에 따름)도 아닌 경우</li> <li>5.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</li> <li>6. 해당 영업이 가맹사업(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정의에 따름)인 경우</li> <li>7. 해당 영업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(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정의에 따름)사이의 거래인 경우</li> <li>8. 해당 영업이 금융투자업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정의에 따름)인 경우</li> </ol>
<p><b>◆ 신고서 작성요령</b></p> <p>※ (*)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,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<b>※ 신고(청)인</b></p> <p>·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.</p> <p>·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,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(www.ftc.go.kr-민원참여-공정위에 익명제보하기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b>※ 신고(청) 내용</b></p> <p>· 아래 「위반행위 사전점검표」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, 해당 여부란에 체크표시(√)한 후,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?</li> <li>-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?</li> <li>-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?</li> <li>-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?</li> <li>-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?</li> <li>-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?</li> </ul> <p>·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&lt;첨부 2: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&gt;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·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

※ 분쟁 조정 여부

-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는 법 위반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. 따라서 직접적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분쟁조정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. 특히 분쟁조정 신청 시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-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증거 자료

-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.

※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출할 경우,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(「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」 참조)

※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,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(☎ 1670-0007) 또는 대리점거래과(☎ 044-200-496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◆ 위반행위 사전점검표

연번	관련 법 조항	위반 사실	해당 여부
1	제5조 (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)	공급업자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였지만(즉,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대리점거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지만), 대리점에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	1-① ( √ )
		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제공하였지만, 계약 체결 즉시 제공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공한 경우	1-② ( √ )
		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제공하였지만, 그 계약서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	1-③ ( √ )
		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제공하였지만, 거래형태, 거래품목 및 기간, 납품방법, 납품장소 및 일시,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, 반품조건, 영업의 양도,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절차 관련 사항 등 대리점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를 제공한 경우	1-④ ( √ )
		공급업자가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	1-⑤ ( √ )
2	제6조 (구입강제 행위의 금지)	공급업자가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한 경우	2-① ( √ )
		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	2-② ( √ )
		공급업자가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한 경우	2-③ ( √ )
		여러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였고,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우	2-④ ( √ )
3	제7조 (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)	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·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한 경우	3-① ( √ )

		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한 경우	3-② ( √ )
		대리점이 고용한 임직원을 공급업자의 사업장 또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등의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한 경우	3-③ ( √ )
		기부금, 협찬금이나 다른 명목으로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한 경우	3-④ ( √ )
		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의 예상 수익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한 경우	3-⑤ ( √ )
		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한 경우	3-⑥ ( √ )
4	제8조 (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)	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경우	4-① ( √ )
		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경우	4-② ( √ )
		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경우	4-③ ( √ )
		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경우	4-④ ( √ )
		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지연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경우	4-⑤ ( √ )
		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경우	4-⑥ ( √ )
		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	5-① ( √ )
5	제9조 (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)	계약 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하여 변경한 경우	5-② ( √ )
		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경우	5-③ ( √ )
		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경우	5-④ ( √ )
		대리점 계약서 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	5-⑤ ( √ )
		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손실,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대리점이 변상하도록 한 경우	5-⑥ ( √ )
		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한 경우	5-⑦ ( √ )
		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한 경우	5-⑧ ( √ )

		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(단, 사전협의 또는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)	5-⑨ ( ✓ )
		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	5-⑩ ( ✓ )
		판매장려금 지급기준, 판매수수료 등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	5-⑪ ( ✓ )
		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을 제한한 경우	5-⑫ ( ✓ )
		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한 경우	5-⑬ ( ✓ )
6	제10조 (경영활동 간섭 금지)	대리점이 임직원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임직원 등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할 때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한 경우	6-① ( ✓ )
		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, 매출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경우	6-② ( ✓ )
		대리점의 거래처, 영업시간, 영업지역,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한 경우	6-③ ( ✓ )
		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(리뉴얼)을 요구한 경우	6-④ ( ✓ )
7	제11조 (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)	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,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 또는 회피한 경우	7-① ( ✓ )
		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,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 또는 회피하도록 한 경우	7-② ( ✓ )
8	제12조 (보복조치의 금지)	대리점이 대리점법상 분쟁조정 신청, 공정위 신고, 공정위 조사 협조,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 정지, 물량 축소 등과 같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	8 ( ✓ )
9	기타(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)  ※ 이 경우,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9 ( ✓ )

<첨부 2 :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>

위반사실 해당여부 (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)	예) 1-①
신고(청)내용	
증거자료	

<첨부 3 : 신고서 작성 예시>

위반사실 해당여부 (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)	2-①
<p>신고(청)내용</p>	<p><b>1. 피신고인과 신고인(대리점) 사이의 거래구조(재판매)</b></p> <p>신고인은 피신고인과 20##년 ##월 ##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(자료 1번 대리점 계약서 참조). 이후 20##년 ##월 ##일부터 피신고인으로부터 ## 브랜드의 ##, ##, ## 등 상품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, 소비자 판매가격과 피신고인 공급가격간의 차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신고인은 다른 공급업자의 상품을 판매하지는 않고 있으며, 피신고인의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</p> <p><b>2. 대리점법 위반</b></p> <p>피신고인은 20##년 ##월 ##일부터 20##년 ##월 ##일까지의 기간 동안 ## 상품을 신고인에게 매월 #####개 이상 구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. 피신고인이 #분기에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, 그 전에 ##상품의 재고를 소진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.</p> <p>그런데 신고인은 도저히 ##제품을 매월 #####개 판매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,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신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. 그러자 피신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면서 수차례 ##제품의 구매를 요구하였습니다(자료 2번 피신고인의 영업사원과 신고인 사이의 문자 내역 참조).</p> <p>이에 신고인은 영업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 마지못해 피신고인의 요구대로 매월 #####개의 ##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. 이 과정에서 신고인은 총 ##,###,###원을 ##제품의 대금으로 지급하였고(자료 3번 신고인의 ##제품 구매 내역 참조), 그렇게 구매한 ##제품 대부분은 판매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(자료 4번 신고인의 ##제품 판매 내역 참조).</p> <p>이러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사전점검표의 2-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</p>
<p>증거자료</p>	<p>자료 1번 : 대리점 계약서                      자료 2번 : 피신고인의 영업사원과 신고인 사이의 문자 내역                      자료 3번 : 신고인의 ##제품 구매 내역                      자료 4번 : 신고인의 ##제품 판매 내역</p>